

2014. 6. 4.(수)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4. 6. 4.(수) 실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규

2014.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 러 두 기

- ◆ 본 안내집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정당법」·「정치자금법」 등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는 규정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 ◆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본 자료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직무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히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행위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안내집에서 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공선규칙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약칭입니다.
- ◆ 본 안내집은 2014년 2월 현재의 법령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내용이 수정·변경 될 수 있습니다.

목 차

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행위 제한	1
II. 「공직선거법」 상 제한규정	3
1.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제9조)	3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제60조)	4
3.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제85조)	6
4.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제57조의6)	8
5.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	9
6. 공무원의 기부행위 금지(제113조, 제114조)	14
7. 기타 제한·금지 행위(제239조, 제240조, 제247조, 제249조)	19
8.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제266조)	20
9.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제268조제3항)	22
III. 「정당법」·「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	23
1.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정당법 제22조)	23
2.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 금지(정치자금법 제8조)	25
IV.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27
1.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27
2.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29
◆ 참고자료 :	33
1. 정치관계법의 기타 법규	33
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4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행위 제한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이해관계를 공직수행에 결부시키거나 특정한 정파적 이익 또는 특정 국민만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임.

2.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제한

「헌법」 제7조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일정한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최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등 관련 규정이 신설 및 개정되었음.

「공직선거법」 신설규정 내용(2014.2.13.)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선거법 제85조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선거법 제268조제3항).

공무원 관련 개별법 개정규정 내용(2014.1.14.)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정치 운동죄),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정치 운동죄)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제15조의2(직원의 업무수행), 제18조(정치 관여죄), 「경찰공무원법」 제31조(벌칙), 「군형법」 제94조(정치 관여) 등 신설·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례규정 내용(2014.1.14.)

공무원이 선거관여 행위 등을 지시받은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선거관여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 공무상의 비밀누설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



「공직선거법」 상 제한규정

1.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내 용

가. 행위주체 :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

‘공무원’의 범위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예컨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 다만 공무원 중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나. 금지행위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의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공직자가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지는 그의 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임(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② 위반사례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특정 정당지지 발언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하고, 전국에 방송된 방송기자클럽초청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 현직 장관의 정당 대표자와의 동행 및 특정 정당 지지발언

현직 장관이 소속 정당의 대표자와 함께 자신의 연고지역을 방문하여 기자간담회에서 “○○를 위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찾으러 왔다”, “○○, △△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고, 당직자 등과 함께 “지방권력 교체하자”는 구호를 외침(중앙선관위 2006. 2. 22.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1 내 용

가. 행위주체 : 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무원 등

나. 금지행위 :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② 위반사례

• 군청직원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군청 6급직원이 자신의 집전화를 이용하여 관내거주 선거구민 600여명에게 “나는 군수의 딸인데 어려운 일은 없느냐, 도와줄 일은 없느냐” 등의 질문을 하여 마치 군수의 딸이 지역주민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여 군수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행위(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6966 판결).

•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지원 하에 ○○○당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국대의원대회와 소속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함(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7101 판결).

3.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거나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

① 내 용

가. 행위주체

- 제85조제1항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 제85조제2항 : 공무원

나. 금지행위

-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85조 제1항)
-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제85조 제2항)
-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10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 등 공공조합,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봄(제85조제2항 후단).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직무와 관련하여’는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함(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195 판결 참조).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행위자의 지위로 인하여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해서 행위자가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을 포함함(헌재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

② 위반사례

- 지방자치단체 국장 및 사업소장이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부하직원 등을 상대로 소속 단체장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대구고법 2006. 8. 31. 선고 2006노226 판결)

- 예비후보자 등록 당일 오찬 모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

현직 ○○군수가 예비후보등록 당일에 각 실·과·소장급 공무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오찬모임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오늘 이후부터는 선거전에 제가 몰입합니다.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유권자이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저를 다시, 동료이지만 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와 부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발언(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814 판결)

4.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① 행위주체

- 제57조의6제1항 : 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2.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참조
- 제57조의6제2항 : 공무원

② 금지행위

-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제57조의6제1항).
 - ☞ 같은 법조항의 당내경선이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을 말함 (선거법 제57조의2제1항).
- 지위를 이용한 당내경선에서의 선거운동(제57조의6제2항).
 - ☞ '지위를 이용하여'에 대해서는 3.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참조

5.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삭제
 5.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7.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라.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有償)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마.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바.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
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1.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
송하는 행위
2.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3.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4.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행위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
일까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중에 공공
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를 포함한다)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 또는 방문할 수
있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
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1] 공무원의 정당·후보자의 업적홍보 등 행위(법 제86조제1항)

가. 행위주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등

나. 금지행위

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제1호)

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참여,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제2호)

다.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 발표하는 행위(제3호)

라.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제5호)

마.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제6호)

바.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제7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등 제한(법 제86조제2항)

가. 행위주체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나. 금지기간 : 모든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금지행위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제2항제4호)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법 제86조제2항 제4호 각목에 따른 경우에는 무방함.

- 지방자치단체장(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제2항제4호의 행위뿐만 아니라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의 행위도 제한됨.

③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홍보물 발행·배부 제한(법 제86조제5항)

가. 행위주체 :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

나. 금지행위

-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배부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참석 제한(법 제86조제6항)

가. 행위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나. 금지기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금지행위

-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음.
-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에는 참석할 수 없음.

라. 예 외

-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는 행위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
-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⑤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행위(법 제86조제7항)

가. 행위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나. 금지행위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시기에 관계없이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6. 공무원의 기부행위 금지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각 목(생략)
2. 의례적 행위 각 목(생략)
3. 구호적·자선적 행위 각 목(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 라.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과약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 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거나, 정당이 해당 당사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아. 변호사·의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률·의료 등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자. 제114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위하여 달력·수첩·탁상일기·메모판 등 홍보물(후보자의 성명이나 직명 또는 사진이 표시된 것은 제외한다)을 그 명의로 종업원이나 제한된 범위의 거래처,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관기관·단체·시설에 배부하거나 영업활동에 부가하여 해당 기업의 영업범위에서 무료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③(생략)

④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②제1항에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

1. 후보자가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

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2.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 또는 구성원으로 있거나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법규 또는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3.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설립한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① 기부행위 주체

가. 선거법 제113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

나. 선거법 제114조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 포함) 또는 그 임·직원(공무원 포함) 등

② 금지행위

가. 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나. 선거법 제114조의 기부행위(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공무원 등)

-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이 경우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봄.

‘당해 선거에 관하여’ 의미

선거법 제114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함(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4386 판결).

③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주체 또는 선거법 제114조의 기부행위 주체가 선거법 제1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제112조제4항).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7. 기타 제한·금지행위

①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 금지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때

②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에 대한 방해 금지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투표안내문 부정 작성 등 금지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접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선거인명부 허위 기재 금지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투표 위조·증감 금지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

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① 제한주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제266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 형의 집행유예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법 제266조제1항에서 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됨.

② 제한기간

-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9.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① 대상범죄

공무원(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

② 연장기간

- 해당 선거일 후 10년
-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정당법」·「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

1.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 금지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①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등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
-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 국·공립대학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

- 사립학교의 교원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함.

-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 '신분·업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라는 등으로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를 말하며, 공익법무관, 공중보건 의사, 국제협력 의사 등이 있음.

② 벌 칙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정당법」 제53조)

2.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 금지

▣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3.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4.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5.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6.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7. "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내 용

-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함.
-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음.

② 별 칙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정치자금법」 제51조제3항)

※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금지(다만, 각급선관위에 기탁하는 기탁금은 가능)

1. 관련규정

-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2. 별 칙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1.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 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점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상범죄

- 선거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위법행위(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 포함)
- 「국민투표법」 제13장 벌칙에 규정된 위법행위

② 보호대상자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

③ 보호사유

신고 등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보호내용

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신고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절차 및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및 제16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를 준용함.

나.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 선거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문답서·확인서 기타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성명·연령·주소 및 직업·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함.
- 문답서 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범죄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문답서 등에 성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함.

다.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누구든지(선관위 위원·직원 포함)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2.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 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⑦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대상범죄

선거법 제262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범죄'와 동일

② 지급대상

선관위에 신고한 자로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한 자

- 신고당시 익명으로 제보한 자가 조사·조치 이후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본인이 신고를 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선관위가 신고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③ 지급요건

-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 혐의자의 성명·주소, 위반일시·내용·장소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조사·조치한 경우
 - ☞ 금전·물품을 제공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전·물품을 제출하여야 함.
 - ☞ 신고·제출의무 등의 절차이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제외함.
-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위법사실을 확인하여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경우

④ 지급기준

- 공선규칙 제143조의4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선관위(읍·면·동선관위를 제외)위원장이 포상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음.
-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음.

⑤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 고액포상금 지급 및 신분보장 강화

- 공무원 내부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소 1억 이상의 신고포상금 지급
- 누가 신고했는지, 누가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조차도 모르게 처리
- 내부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여 신분상 불이익 없도록 조치

⑥ 포상금 지급제한

포상금지급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공선규칙 제143조의4).

- 단순히 언론 또는 인터넷에 방영·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정당(정당의 의사에 따라 정당관계자가 그 명의로 신고한 경우 포함) 또는 해당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 ☞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후보자와 선거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의 가족'을 말함.
- 신고인이 검찰·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선관위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을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선관위(읍·면·동선관위 포함) 위원·직원인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7 포상금 반환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함. 이 경우 해당 신고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함.

-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정치관계법외 기타 법규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 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시행 2014. 1. 14.] [개정 2014. 1. 14. 법률 제12234호]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치관계법외 기타 법규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1.1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4. 1. 1.] [개정 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27호]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실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배부·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정치관계법의 기타 법규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4 .1. 14.] [개정 2014. 1. 14. 법률 제12235호]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3>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1.14]

정치관계법의 기타 법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14. 1. 1.] [개정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0호]

제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을 조직하거나, 정당의 조직을 확장하거나, 그 밖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또는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국가정보원법

[시행 2014 .1. 14.] [개정 2014. 1. 14. 법률 제12266호]

제9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정치관계법의 기타 법규

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원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④ 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14>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제15조의2(직원의 업무수행)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수행의 절차와 방식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18조(정치 관여죄)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

정치관계법의 기타 법규

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4>

경찰공무원법

[시행 2014 .1. 14.] [개정 2014. 1. 14. 법률 제12233호]

제31조(벌칙)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 수행 중인 경우에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18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집단 살상의 위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제18조 또는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58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4.1.14>

④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군형법

[시행 2014 .1. 14.] [개정 2014. 1. 14. 법률 제12232호]

제94조(정치 관여) ①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정치관계법의 기타 법규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4 .1. 14.] [개정 2014. 1. 14. 법률 제12265호]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정치관계법외 기타 법규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 사항	기준 일	관계법조
상시		-기부행위 제한·금지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의 광고출연 금지	상시	법§112 법§86①1,2,3 법§86⑦
2013. 12. 6. ~ 2014. 6. 4.까지	금 수	-각종 시설물 설치 등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90 법§93
2. 4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4.부터 6. 4.까지	화 수	창당대회 등 개최장소, 참석대상, 고지방법 등 제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40
2. 21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및 구·시의 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구·시의원 선거]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법 부칙§6
3. 6까지	목	각급선거관리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라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 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 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법§53①②
3. 23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3. 6부터 6. 4까지	목 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의정활동보고 금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3⑤ 법§111
4. 5부터 6. 4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 또는 후보자·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법§108②
5. 5부터 6. 4까지	월 수	당원집회 개최 금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41①
5. 15부터 5. 16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22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9부터 6. 4. 18:00까지	목 수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법§108①
5. 30부터 5. 31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6시 ~ 오후6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법§158의3④
6. 4	수	투 표(오전6시 ~ 오후6시)	선거일	법 제10장
		개 표(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5부터 6. 17.까지	목 화	현수막 게시를 통한 당선·낙선사례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동안	법§118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규

2014年 2月 日 인쇄

2014年 2月 日 발행

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
TEL. 503-2095(대표전화)

《비매품》



선거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

**위법행위
신고를 받습니다**

홍보대사
SBS나운서 박선영

선거 관련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며,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상금 지급



참참

바루

알리

소중한 권리 공정한 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